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 | |
|------|------|
| 의안번호 | 제57호 |
|------|------|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제 출 자 | 경제문화국장 |
| 제출연월일 | 2023. 4. 11. |

예산실장 심사필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57호 |
|----------|------|

제출연월일 : 2023. 4. 11.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는 관리대상 체육센터를 논산국민체육센터와 강경수영장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신규 체육센터(연무국민체육센터)가 준공됨으로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센터 시설 이용시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이용객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신규 체육센터(연무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함.(안 제3조제4호)
- 나. 지도 강사 위촉 자격기준 관련하여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포함함(안 제18조제3항 별표2)
- 다.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제7조의2 신설)에 맞게 나이에서 “만” 표시 삭제함.(안 제2조제7호~제9호, 안 제2조제11호, 안 제6조제5호, 안 제11조제4호, 안 제12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기획감사실-3115(2023. 3. 28.)호]
- 2)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복지정책과-9229(2023. 3. 20.)호]
- 3)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 아님[예산실-2847(2023. 3. 8.)호]
- 4) 입법예고 및 전자공청회
 - 가) 예고기간 : 2023. 3. 9. ~ 2023. 3. 29. (20일 이상)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비용추계서 : 붙임 참조
- 6) 충청남도 소관실과 : 충청남도 체육진흥과

□ 개정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논산국민체육센터”를 “논산·연무 국민체육센터”로 한다.

제2조제7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를 “6세 이상 12세 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를 “13세 이상 18세 이하”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근무요원 포함”을 “사회복무요원 등 포함”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논산국민체육센터”를 “논산·연무 국민체육센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연무국민체육센터

가.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나. 후생복지시설 : 휴게실, 의무강사실

다.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등

제4조제3항제6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만3세”를 “3세”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를 “13세 이상 55세 이하”로 한다.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2 중 수영란과 안전근무요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
|--------|--|--|
| 수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수영연맹 또는 근대5종연맹에서 추천한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안전근무요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 관 | 부 | 서 | 성 | 명 |
|-------------|-----------------|---|---|---|-----------------------|
| 입 안 자 | 체 육 진 흥 과 장 | | | 김 | 일 규 |
| | 체 육 시 설 운 영 팀 장 | | | 남 | 기 훈 |
| | 담 당 자 | | | 남 | 성 현 (041-746-8405)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설치한 <u>논산국민체육센터</u>와 <u>강경실내수영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6. (생략)</p> <p>7.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의한 <u>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u>로 보호자와 동행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p> <p>8. “어린이”란 <u>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u>를 말한다.</p> <p>9. “청소년”이란 <u>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u>를 말한다.</p> <p>10. “군인”이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부사관 이하의 자(<u>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대원, 의무소방원 및 공익</u></p> | <p>제1조(목적) ----- ----- ----- <u>논산·연무 국민체육센터</u>----- ----- ----- -----.</p> <p>제2조(정의)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 <u>3세</u>----- ----- -----.</p> <p>8. ----- <u>6세 이상 12세 이하</u>----- -----.</p> <p>9. ----- <u>13세 이상 18세 이하</u>-----.</p> <p>10. ----- ----- -----(<u>사회복무요원 등 포함</u>)----- -----.</p> |

근무요원 포함)를 말한다

11. “성인”이란 만 19세 이상인 자를 말하며, 65세 이상인 자를 경로 대상으로 한다.

12. ~ 15. (생략)

제3조(운영시설) 논산국민체육센터 및 강경실내수영장(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2. (생략)

3. 삭제

<신설>

제4조(사용허가) ①·② (생략)

③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1. ----- 19세 -----

-----.

12. ~ 15. (현행과 같음)

제3조(운영시설) 논산·연무 국민체육센터 -----

-----.

1. 2. (현행과 같음)

4.연무국민체육센터

가. 체육시설 : 수영장, 헬스장, 다목적실,

나. 후생복지시설 : 휴게실, 의무강사실

다. 부대시설 : 사무실, 탈의실, 샤워실, 체온유지실, 화장실, 매표소, 창고, 주차장 등

제4조(사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5. (생략)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는 사항 이외의 그 밖의 활동

④ (생략)

제6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 4. (생략)

5. 만 3세 미만의 영아(단, 이용자에 한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다음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8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 3. (생략)

4. 만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협회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 제5호-----

④ (현행과 같음)

제6조(입장의 제한) -----

-----.

1. ~ 4. (현행과 같음)

5. 3세 -----

제11조(사용료 감면) -----

-----.

1. ~ 3. (현행과 같음)

4. 65세 -----

5. (현행과 같음)

제12조(이용료 할인)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의 50 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해당하는 사람

5. ~ 9. (생략)

④ (생략)

⑤ 논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서 수영장을 이용하는 만 13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가입기 여성에게는 이용료의 10 퍼센트를 할인 할 수 있다.

⑥ (생략)

제12조(이용료 할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3. (현행과 같음)

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 조에 해당하는 사람

5. ~ 9.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13세 이상 55세 이하 -----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 | | 개정안 | | |
|---------------------------------|---|----|---------------------------------|---|----|
| [별표 2]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제18조 관련) | | | [별표 2] 지도강사 위촉 자격기준(제18조 관련) | | |
| 종 목 | 자 격 기 준 | 비고 | 종 목 | 자 격 기 준 | 비고 |
| 수 영 | ○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u>인명구조 자격증</u>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수영연맹에서 추천한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u>인명구조 자격증</u>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수 영 | ○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u>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u>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수영연맹 또는 근대5종연맹에서 추천한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u>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u>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한 자 | |
| 안전근무 요원 | ○ <u>인명구조 자격증</u>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 안전근무 요원 | ○ <u>인명구조 관련 자격증(수상구조사, 인명구조요원 등)</u> 또는 수상안전요원 자격증 소지자 | |
| 헬스 | ○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헬스지도 또는 선수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 | | 헬스 | (현행과 같음) | |
| 실내미용 체조 | ○ 해당 프로그램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프로그램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 | | 실내미용 체조 | (현행과 같음) | |
| 아쿠아 로빅 | ○ 아쿠아로빅 자격증 소지자 ○ 아쿠아로빅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자로서 협회에서 추천한 자 | | 아쿠아 로빅 | (현행과 같음) | |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0조(사용허가)
- 논산시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및 이용료)

2. 비용추계결과**가. 추계의 전제**

-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세입
 - 체육센터 사용료 및 이용료 수입 발생에 따른 세입
- ※ 논산국민체육센터를 기준으로 산정

나. 추계결과 : 444,000,000원(년)

- 행정재산 대부료 : 12,000,000원(년)
- 체육센터 사용료 : 9,000,000원(년)
- 체육센터 이용료 : 423,000,000원(년)

3.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김 일 규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 구 분 | 1차년도 (2023년) | 2차년도 (2024년) | 3차년도 (2025년) | 4차년도 (2026년) | 5차년도 (2027년) | 계 |
|---------------------|-----------------|-----------------|-----------------|-----------------|-----------------|-----------|
| 세 입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2,220,000 |
| 세외수입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2,220,000 |
| 세 출 | | | | | | |
| | | | | | | |
| | | | | | | |
| 재원 조달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2,220,000 |
| 의존 재원 | 소 계 | | | | | |
| | 보조금 | | | | | |
| | 지방교부세 | | | | | |
| 자체 수입 | 소 계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2,220,000 |
| | 지방세 | | | | | |
| | 세외수입 | 444,000 | 444,000 | 444,000 | 444,000 | 2,220,000 |
| 지방채 | | | | | | |
| 기 금 | |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 |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